

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 :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
2. 작성기준일 : 2023.12.06

3. 정정사유 :

- 책임운용역 변경(강현담 이사 -> 이찬휘 이사)
- 부책임운용역 추가(강현담 이사)
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(제89조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(제269조)

4. 효력발생일 : 2024.01.16

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4 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9 조 개정 반영 (21.10.21)	② 신탁업자는 ---- 감시업무, <추가>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② 신탁업자는 ----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제 48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자본시장법 제 89 조 1 항 2 호 개정 반영 (2021.10.21)	② 집합투자업자는 --- 공시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추가>	② 집합투자업자는 --- 공시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.)

<일괄신고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역 변경 및 부책임운용역 추가	책임 : 강현담 이사 부책임 : <추가>	책임 : 이찬휘 이사 부책임 : 강현담 이사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나.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	책임운용역 변경 및 부책임운용역 추가	책임 : 강현담 이사 부책임 : <추가>	책임 : 이찬휘 이사 부책임 : 강현담 이사
다.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	모투자신탁 책임운용역 변경 및 부책임운용역 추가	[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] 책임: 함병현 상무 부책임 : <추가>	[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] 책임 : 이찬휘 이사 부책임 : 강현담 이사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 및 주석 추가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		<주석 추가>	

		<p>주 1) 위 예시는 투자자가 1,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·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.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, 연간 투자수익률은 5%, 판매 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·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. 그러나,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,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주 2) 종류 A 와 종류 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, 종류 A-e 와 종류 C-e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 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 <p>주 3) [종류 A, 종류 A-e, 종류 A-G]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각각 [납입금액의 1.0%, 납입금액의 0.5% 납입금액의 0.7%]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.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주 4) [종류 S] 수익증권은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한 값으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은 감소합니다.</p>
--	--	---

[제 2 부 별첨 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나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(1) 투자대상	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폐지(23.5.16)	<p>③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---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---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p> <p>④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---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---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p>	<p>③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---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삭제>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---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p> <p>④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--- 사채, <삭제>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---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p>
나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(2) 투자제한	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폐지(23.5.16)	<p>④ 동일종목투자(예외) 다만, --- 투자할 수 있음 나. 지방채증권, --- 또는 어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--- 투자하는 경우</p>	<p>④ 동일종목투자(예외) 다만, --- 투자할 수 있음 나. 지방채증권, --- 또는 어음, <삭제>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<삭제>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--- 투자하는 경우</p>
나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(3)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2.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<p>2.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</p> <p>3) 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(신탁업자)</p> <p>나. 주요업무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9 조 개정사항</p>	<p>(1) 주요업무 <생략> <추가></p> <p>-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</p> <p>[의무] ▶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/ --- /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	<p>(1) 주요업무 <동일> -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</p> <p>-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</p> <p>[의무] ▶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/ --- /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69 조제 4항에서 정하는 사항</p>